

# 18세기 서울의 상업구조변동

고 동 환

1. 머리말
2. 市廳制度의 정비와 新設市廳의 증가
  - 1) 市廳制度의 정비
  - 2) 新設市廳의 증가와 通共政策
3. 商街 확대와 店鋪商業의 발달
  - 1) 三大市의 형성과 상가확대
  - 2) 店鋪商業의 발달
4. 民營手工業과 商業的 農業의 발달
  - 1) 민영수공업의 발달
  - 2) 상업적 농업의 발달
5. 商圈의 확대와 유통체계의 변화
  - 1) 서울 商圈의 확대
  - 2) 상품유통체계의 변화
6. 맺음말

## 1. 머리말

조선후기 서울 상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상당한 연구가 축적되었다. 70년대 난전과 사상에 대한 연구를 필두로 하여, 최근에는 개별시전연구와 경강상업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었다. 그 결과 18세기에는 상업담당세력이 특권상인인 시전상인에서 자유상인인 사상으로 변했을 뿐만 아니라 유통로와 상품유통체계, 시장권에 이르는 구조적인 변화가 이 시기에 나타났음이 확인되었다.<sup>1)</sup> 그

1) 조선후기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에 대한 연구사적 정리는 고동환, 1995 「상품유통경제의 발전」

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론이 보다 설득력을 지니려면, 이러한 상업체제 변동이 구체화되었던 서울의 도시상업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동안의 연구는 주지하듯이 서울의 시전체제와 그에 대한 대항세력으로서 사상들의 활동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었다. 그러나 18세기 서울 상업은 시전체제와 사상들만으로 이해될 수 있는 단순한 구조를 지닌 것은 결코 아니다. 이 시기 서울 상업은 중세적인 틀을 벗어나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전과 사상간의 대립구도로서만 이해해서는 당시 상업구조속에서 새로 등장하는 많은 요소들을 놓칠 가능성이 많다. 특히 18세기 서울의 상업문제를 상업사적인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서울 도시의 구조문제와 관련시켜 이해하고자 한다면 상공업지대의 편성과 더불어 시전상업 이외의 각종 영업의 발달모습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그동안 연구에서 소홀히 취급되었던 시전과 사상간의 대립이 구조화되는 과정, 그리고 도시상업의 한 양상으로서 시전상업외의 점포상업, 수공업과 상업적 농업문제, 그리고 이와 같은 상업변동의 최종적 귀결로서 상권확대와 상품유통체제 변동문제를 동일한 시각에서 다룸으로써 18세기 상업구조변동의 총체성을 복원해보자 하는 시도이다. 이를 통하여 도시사적인 관점에서 18세기 서울의 도시구조가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진전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 2. 市廛制度의 정비와 新設市廛의 증가

### 1) 市廛制度의 정비

임란을 겪은 조선정부는 향촌사회의 농본적 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王都 서울의 안정화를 추구해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의 하나였다. 서울을 안정화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전란과정에서 흩어져버린 시전상인을 다시 결집해서 정상적인 상품유통을 유지해야 했다. 그러므로 임란이후에는 전란시 흩어진 시전상인을 결집하는 정책을 취했다.<sup>2)</sup> 이러한 정책을 펼친 결과, 1630년 경에는

『한국역사입문 2-중세편』 한국역사연구회, 풀빛 참조.

2) 『增補文獻備考』 권 163, 市權考 1

서울에 수십개 정도의 시전이 복구되어 운영될 수 있었고,<sup>3)</sup> 장시설립이 금지된 경기도지역에도 場市가 증가하였다.<sup>4)</sup> 서울을 중심으로한 경인지역까지 상품화폐경제가 점차 회복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병자호란으로 인하여 회복기에 들어선 시전상인들은 청나라에서 요구하는 각종 歲幣나 방물을 전담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하였다.<sup>5)</sup> 1645년 이후 청나라와의 수탈적 조공무역이 안정을 찾게 되자 이러한 시전상인의 처지는 회복되기 시작하였고,<sup>6)</sup> 이에 따라 서울의 시전체제도 점차 정상을 되찾고 정비되어 갔다.

조선후기에는 평시서에서 市案에 시전이름을 등록하여, 국역을 부담하게 하는 대신에, 특정상품에 대한 독점적 판매권을 부여하는 시안제도를 운영하였다.<sup>7)</sup> 이러한 시안제도가 언제부터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으나, 시안에 등록되는 내용은 시대에 따라 달랐다. 적어도 17세기말까지는 시전의 이름, 그리고 국가에 대한 시전의 국역부담비율을 나타내는 分役과 分等만이 기록되었을 뿐,<sup>8)</sup> 상인의 이름<sup>9)</sup>이나 시전에서 취급하는 물종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때, 17세기 후반까지의 시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바처럼 비시전계 상인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주로 국가에 의한 시전통제, 즉 시전상인의 국역부담을 중심으로 운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시안제도는 17세기 후반이후 서울인구가 급증하고 급속히 상업도시

宣祖三十三年 領議政李恒福劄曰 庶民之中 富商大賈爲之頭首 而因亂散處 隨時占利 以圖富足 而不思舊居者 亦多有之 (중략) 自來今行移外方 京商之散處其地者 ——摘發 使還舊業

3) 『승정원일기』 29책 인조 8년 2월 26일

4) 『增補文獻備考』 권 163, 市糶考 1

八路各官 各有場市 以便貨遷 惟京畿不得濫設者 意非偶然 盖京城爲人民之都會 而且是不耕不耘之地 必待四方之委輸貨物流通 而有所相資 京畿近京 故畿甸之民 各以土產來京換貿 則庶京中畿甸 相依爲賴也 經變以後 京畿設場 其數有繁 令京畿監司 除開城府外 一禁場市似宜

5) 유원동, 1977 『韓國近代經濟史研究』 일지사, 161-165쪽

6) 전해중, 1970 『한중관계사연구』 일조각; 전해중, 1971 『청대 한중관계의 일고찰-조공제를 통하여본 청의 태도의 변천에 대하여-』 『동양학』 1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7) 시안제도의 운영에 대해서는 卞光錫, 1997 「朝鮮後期 市廳研究」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참조.

8) 分役に 대해서는 그동안 잘 알려져 있으나 分等은 아직 그 성격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分等に 대해서는 高東煥, 1992 「18세기 서울에서의 魚物流通構造」 『韓國史論』 28 서울대 국사학과 참조.

9) 『승정원일기』 724책 영조 7년 6월 9일

至於本署市案 元無人名載錄之規 又無近來因或狀改案追錄之事

로 성장하면서 변동하기 시작하였다.<sup>10)</sup> 현재 市案은 1664년(현종 5), 1686년(숙종 12), 1706년(숙종 32), 1758년(영조 34) 총 네차례에 걸쳐 개정된 것으로 파악된다.<sup>11)</sup> 이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것은 1686년 이전의 시안에는 각 시전이 취급하는 전관물종이 기록되지 않았으나, 1706년 이후에야 비로소 자세히 기록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시전제도 운영에 있어 획기적 변화가 아닐 수 없다. 그 변화의 의미는 우선 종전 국역부담 위주의 시안제도가 상인사이의 상품판매를 통제하고 규율하는 것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또한 물종별 구분이 자세하게 기록되었다는 점은 이 시기를 계기로 시전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가 대폭 늘어났음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요컨대 18세기 초를 계기로 서울의 시전상업체제가 정부에 대한 물자조달이나 進拜중심의 기능에서 민간에 대한 상품판매중심으로 그 성격이 변해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17세기 군인들의 상품판매행위에 대한 정부의 조치들에서도 확인된다.

인조연간부터 정부에서는 훈련도감 군인들에게 市牌를 지급하고 出市販賣를 허용하였다. 특히 이들에게는 ‘自己所作工役之物及其他各種所持之物’이나 ‘手中所出之物’에 한하여 자유로운 판매를 허용하였고, 판매처의 경우도 ‘別作一市’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군인들의 行市, 坐市販賣, 家前小市 등은 허용하였다.<sup>12)</sup> 그리고 1677년(숙종 3)에는 군인들도 市案에 許入시켜 시전상인과 함께 응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sup>13)</sup> 즉 군인들도 시전상인처럼 국역을 부담하는 대가로 市案에 등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적어도 17세기 후반까지는 군인수공업자들에 의한 市案등록은 매우 자유로운 편이었다. 다시말하면 국가에 대한 국역부담을 전제로 자유롭게 시안에 편입될 수 있었

10) 17세기 후반이후 서울의 상업도시화과정에 대해서는 고동환, 1997 「17-18세기 서울 도시 구조의 변화」 『歷史와 都市-제40회 전국역사학대회발표요지』 참조.

11) 『비변사등록』 172책, 정조 12년 정월 16일

取考本營所在前後市案 則一卷年條未詳 一卷康熙三年(1664)修正 一卷康熙二十五年(1686)修正 一卷康熙四十五年(1706)修正 一卷乾隆二十三年(1758)修正 合爲五卷 而康熙二十五年前市案 則毋論某種物種間 不區別載錄 自康熙四十五年 始爲詳錄

12) 宋贊植, 1973 『李朝後期 手工業에 관한 研究』 서울대출판부, 16쪽 참조.

13) 『승정원일기』 277책 숙종 6년 7월 12일

던 것이다. 이러한 것은 17세기 후반의 시안제도가 주로 국역부담을 위주로 운영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후술하듯이 이 시기에는 시전상인들의 금난전권이 확고한 법적 권리로 정착되지 않았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18세기 초 시전제도가 민간에 대한 판매를 규율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그 성격이 전환되었음은 1706년을 전후한 시기에 비시전계 상인의 난전활동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데서도 확인된다. 시전상인들의 독점적 영업행위를 보강했던 禁亂塵權은 크게 亂塵人 捉納權과 亂塵物 屬公權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의 금난전권은 조선초기의 것과 그 성격이 크게 달랐다. 조선초기 禁亂은 시전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비시전계 상인인 사상세력의 상업활동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시전상인들이 저지르는 불법행위를 京市署나 한성부, 사헌부등에서 규찰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었다.<sup>14)</sup> 이러한 禁亂의 내용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조선후기의 내용으로 변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기록이 없다. 조선후기에 법제로 나타나는 최초의 난전규정은 1688년(숙종 14)에 제정된 三法司禁制節目으로, 亂塵은 刑曹에서 관할하는 禁制條였다. 이때 형조는 亂塵, 高重, 大小斗 등을 함께 규찰하였는데, 단 이 조항들을 어긴 사람을 붙잡는 일은 평시서에서 담당하였고, 형조는 평시서에서 이송된 죄인을 처결하는 권한만을 행사하였다.<sup>15)</sup> 高重, 大小斗규정이 시전상인들의 불법적 도량형사용을 규제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三法司禁制節目에 나타난 난전규정도 시전상인을 포함한 모든 상인들의 불법행위를 규제하는 포괄적 내용으로 이해될 수 있다. 물론 정부로부터 허가를 얻지 않고 판매하는 사상들의 상행위를 금지하는 것도 이 조항에 포함되었을테지만, 당시까지만해도 이러한 조치는 18세기처럼 강력한 권한으로 작용한 것은 아닌 듯 하다. 이러한 것은 다음의 耳掩塵의 사례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14) 朴平植, 1997 「朝鮮前期의 商業과 商業政策」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참조.

15) 『增補文獻備考』 권 132 刑考 6 禁制, 諸禁  
肅宗 十四年 三法司禁制節目

耳掩匠등이 제조한 耳掩을 出市發賣하여 저절로 1전이 되었기 때문에 耳掩臺이라 칭하여 평시서에 속하게 하였다. 작년 이래로 이업장 등은 內役외에 諸上司, 諸宮家에서 매일 捉去하는 숫자가 많아 장인들이 가을에서 봄까지 각처에서 오래 입역하여 하루도 집에 있으면서 자기 물건을 제조하여 자생할 처지가 못되었으므로 이업전은 자연히 혁파되었다. 그러므로 평시서에서는 이미 그 市案을 지위버리고 비변사에 첩보하여 공조에 이속시켰다.<sup>16)</sup>

여기서 보듯이 17세기 후반 이업전은 어떠한 형식적 규제없이 매우 자연스럽게 창설되었으며, 1678년(숙종 4) 이업전이 폐지될 때 이업장들은 18세기 시전상인과 달리 이에 대해 반발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당시 시전제도에서는 18세기와 같은 강력한 금난전권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17세기 후반에 금난전권이 강력하게 행사되지 않았던 이유는 당시까지만 해도 시전상인들 사이에서는 물종별 전관제가 확립되지 않았고, 또 비시전계 상인들이 시전상인들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금난전권의 권리내용도 18세기이후에야 비로소 명확해진다. 평시서 시안에 물종별 구분이 분명히 기록되는 1706년에는 난전에 대한 관할 기관이 형조에서 한성부로 이관되었다.<sup>17)</sup> 또한 1710년(숙종 36)에는 '난전물 가격이 속전에 못미칠 경우에는 경중을 가려笞를 가한다'는 법이 제정되었으며,<sup>18)</sup> 1713년(숙종 39)에는 착납권의 주체를 평시서와 한성부에서 시전상인으로 바꾸는 조치가 내려지고 있다.<sup>19)</sup>

금난전권의 구체적인 권리내용은 이처럼 한 번 법제화된 이래 고정되어 계속 지켜진 것이 아니라 풍·흉의 차이, 시전상인의 세력여하 등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였다. 예컨대 1724년(경종 4)에는 난전물 屬公權을 철폐하고, 난전인

16) 『비변사등록』 34책 숙종 4년 9월27일

17) 『新補受教輯錄』 刑典 禁制  
亂塵事 移送京兆 康熙 丙戌(1706, 숙종 32년)承傳

18) 『新補受教輯錄』 刑典 禁制  
亂塵之物 折價不及贖錢者 從輕重決笞 而出禁三司 一體爲之 康熙 庚寅(1710, 숙종 36년)承傳

19) 『新補受教輯錄』 刑典 禁制  
亂塵人 使市人捉告推治 康熙 癸巳(1713, 숙종 39년)承傳

착납권만을 인정하였다.<sup>20)</sup> 그러나 이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1736년(영조 12)에 다시 속공의 철폐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1727년(영조 3)에는 시전상인이 난전인을 직접 착납하는 것을 금하고, 한성부에서 이를 전담하도록 바꾸었으며,<sup>21)</sup> 1741년(영조 17)에는 시전인에 의한 난전착납금지를 재차 강조하고 있다.<sup>22)</sup> 이와 같이 난전인 착납권의 행사주체가 여러 번 바뀌었는데, 1786년(정조 10) 『日省錄』의 기사에서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처음 난전법을 정할 때에는 9개의 시전은 한성부에서 出禁하고, 그 밖에 5개 시전은 시전상인이 직접 捉納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였다. 그 후에 各塵 名色이 계속 생겨나 번잡해지자, 금난전권은 모두 9개 시전의례를 준용하게 되었다.<sup>23)</sup>

이 자료에서 보듯이 난전법을 처음 정할 때 9개 시전은 한성부에서, 5개시전은 시전상인이 난전인을 직접 착납하도록 규정되었는데, 그 후에 시전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금난전권의 행사는 모든 시전으로 확대되었고, 그 권리내용도 한성부에서 난전인을 착납하는 것으로 변해갔다는 것이다. 난전법을 처음 정할 때의 규정인 9개시전의 漢城府出禁, 5개시전의 시전상인에 의한 난전인 捉納규정은 후술하듯이 1764년(영조 40) 保民司節目의 규정과 비슷하다.<sup>24)</sup> 이들 자료들과 앞서 18세기 전반의 난전인 착납권에 대한 제규정들을 감안한다면, 1786년의 '난전법을 처음 정할 때'의 시기는 18세기 초로 추정할 수

20) 『秋官志』 제4편 掌禁部 法禁 亂塵條

21) 『영조실록』 권 11 영조 3년 6월 경인

22) 『비변사등록』 109책 영조 17년 9월 19일

23) 『日省錄』 정조 10년 3월 24일

亂塵定法之初 九塵則自京兆出禁 其外五塵則使塵人捉納者 法意有在 其後各塵名色 不勝其繁 亂塵之禁 一用九塵之例

24) 주 47)의 자료에서 보듯이 9개 시전에 대한 한성부 출금은 1764년보다 이전의 사실이다. 또한 보민사절목에서는 난전인을 직접 捉納할 수 있는 시전도 5개가 아니라 8개로 규정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자료에서 말하는 '亂塵定法之初'의 시기를 1764년으로 상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사를 통해서도 난전법이 확고하게 정착한 시기가 적어도 1764년으로부터 그다지 먼 시기는 아닐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있지 않을까 한다. 왜냐하면 앞서의 자료에서 난전인 착납권에 대한 규정이 분명해지는 것이 1710년을 전후한 18세기 초이기 때문이다. 물론 亂塵法은 후술하는 生鮮亂塵의 기사에서 확인되듯이 17세기 중엽에도 존재하였다.<sup>25)</sup> 그러나 18세기 후반에 난전법을 정할 처음 시기를 18세기 초로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는 다름아닌 금난전권의 권리내용이 비시전계 상인에 대한 규제로 확립되는 시기가 바로 1710년을 전후한 시기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종전부터 존재했던 금난전권의 행사가 18세기 초를 계기로 시전상인에 대한 철저한 보호권으로 변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금난전권의 권리내용이 이렇게 변할 수 밖에 없는 원인은 비시전계 상인인 사상들이 성장하여 상품유통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던 시전상인을 위협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어물의 유통지배권을 놓고 벌어진 여러 분쟁을 자세히 기록한 『市民謄錄』이나 『各塵記事』의 자료에서도 1715년까지는 주로 내어물전과 외어물전, 즉 시전상인사이의 분쟁기록이 주를 이루나, 1715년부터는 내·외어물전과 사상들사이의 분쟁이 주를 이루고 있다.<sup>26)</sup> 이는 1715년을 계기로 어물유통에서의 대립구도가 시전상인과 난전상인의 대립으로 변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립구도 전환의 원인은 비시전계상인에 대한 통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난전권이 18세기 초를 계기로 시전상인들의 법적 권리로 확고히 정착되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2) 新設市塵의 증가와 通共政策

### ① 新設市塵의 증가

1710년을 전후하여 금난전권의 권리내용이 강화되면, 서울 상업계 내부에는 두가지 새로운 양상이 나타난다. 하나는 비시전계상인들에 의한 시전창설 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구한 통공정책이었다.

조선후기 신설시전이 증가하는 시기는 두차례에 걸쳐 있었는데, 17세기 후

25) 주 29) 참조

26) 高東煥, 1992 「18세기 서울에서의 魚物流通構造」 『韓國史論』 28 서울대 국사학과, 161~168쪽 참조.



반과 18세기 전반이었다. 17세기 후반에 설치된 시전을 살펴보면, 1660년 경에는 西江米塵, 1680년 경에는 麻浦米塵과 門外米塵, 1671년에는 서소문 밖에 外魚物塵이 각각 창설되었고, 鷄兒塵, 南草塵, 門外隅塵, 門外床塵 등이 시기에 창설되었다.<sup>27)</sup> 涼臺塵은 1664년경에 창설되었으며,<sup>28)</sup> 서소문밖의 생선난전도 1660년에 발생하였다.<sup>29)</sup> 생선난전은 처음에는 소수인의 매매하였으나 1660년에는 도성내의 생선전과 그 크기를 다들만큼 성장하였고, 1696년(숙종 22)경에는 십수명에 불과한 생선전에 비해 서소문밖의 생선난전은 2-30인에 달해 생선난전의 규모가 본전보다 커졌다.<sup>30)</sup> 이 생선난전은 1702년(숙종 28) 평시서 시안에 등록됨으로써 공식적인 시전으로 인가를 받았다.<sup>31)</sup>

17세기 후반에 창설된 시전들은 대부분 동일한 물종을 판매하는 시전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처를 달리하여 도성밖이나 경강등지에서 설치된 것이었다. 또한 이들 신설시전의 판매물종은 대부분 미곡이나, 어물, 과일 등 도성민들의 일용소비품이었다. 이러한 점은 이 시기 신전창설의 원인이 서울의 실거주민구 증가에 따른 소비증가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전창설이 도성밖이나 경강변이라는 점은 이 시기 인구증가가 도성밖이나 경강변을 중심

27) 高東煥, 위의 논문, 155~156쪽 참조

28) 『승정원일기』 304책 숙종 10년 6월 23일

涼臺塵設置 已過二十餘年 今難卒罷 而所謂涼臺 皆是城外無依寡女及砲手妻 手造爲業 賣食資生

29) 『上言謄錄』 卍12898 順治17년(현종 1년, 1660) 12월 18일

生鮮前人 崔一立等 上言(중략) 西小門外 無賴之人 別作一前 自江上入來之魚 中間掠取賣買 故本前則將未免闕供之患是如爲白有臥乎所 西小門外 生鮮賣買之事 未知創於何年是白乎喻 然不過若干數而已 不至於設前 故自法府有時出禁其亂塵爲白有如何乎 今則漸至漫延 將與本前 爭其大小 而同西小門外 乃是江上魚商 所經之初頭 取其便近 或不過此入城 則本前之失利 在所不免宜乎

30) 『上言謄錄』 卍12898 康熙35년(숙종 22년, 1696) 9월 11일

生鮮塵市民 崔貴特等 駕前上言(중략) 逐日供上及祭享生鮮 專責於矣徒等塵 實此十數人力之所難堪是白如乎 近來人心不古 三江奸民 乃與三門內外無賴之輩 表裏不同 晨昏出入 各色生鮮 恣意亂賣 本塵之民 則斂手無爲 只守空塵 雖欲執捉 呈課於三司 以備據法治罪之地 而此輩自負勢力 視市民與官差如蚊蠅不喻 乘夜橫行 有若強盜 多者二三十人 少者十數人 或佩劍或持杖 固非殘弊市民之所敢下手者 亦非三司吏卒之所可追捕者 則有別樣舉措 然後方可禁斷是白齊

31) 『新報受教輯錄』 刑典 禁制

生鮮亂塵 令三司輪出入禁 亦令本署錄於市案 一體差役 康熙壬午(숙종 28년, 1702) 承傳

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하기도 한다.<sup>32)</sup>

시전창설이 대거 이루어지는 두번째 시기는 18세기 전반이었다. 이 시기에는 상품유통량의 증가와 새로운 상품의 등장에 따라 새로운 시전이 대거 등장하였다. 冶匠들은 1732년(영조 8)에 破鐵塵<sup>33)</sup>을 창설하였고,<sup>34)</sup> 刀子匠들은 1744년에 도자전을 설립하였다.<sup>35)</sup> 1720년대에는 엽초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영조 20)折草塵이, 1747년(영조 23)에는 漆塵이 창설되었으며,<sup>36)</sup> 1757년(영조 33)에는 호위청 군사들이 기존 衣塵이 있음에도 新衣塵을 창설하였다.<sup>37)</sup> 이외에도 이 시기 신전창설은 채소, 기름, 젓갈 등 극히 미미한 물종에까지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1741년(영조 17) 特進官 李普赫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서울에서 놀고 먹는 무리들이 평시서에 서류를 제출하여 시전을 새로 설립한 자가 5-6년내에 매우 많아졌다. 이들은 상품을 판매하는 일보다 난전 잡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심지어 채소나 기름, 젓갈 같은 것도 마음대로 거래할 수 없을 정도이다. 지방민이 가져오는 소소한 물건을 판매하여 먹고사는 서울의 영세민들이 금난전권의 피해를 입어 장차 교역이 끊어질 형편이다. 정부의 고관들중에는 난전으로 서울의 상거래 질서가 난잡해 질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이와 같은 폐단을 상세히 모르는 까닭이다.<sup>38)</sup>

즉 무뢰배들이 금난전권의 특권을 얻기 위해 소소한 물종에까지 시전을 창설하고 있다는 것이다.

32) 高東煥, 1993 『18,19세기 서울 京江地域의 商業發達』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2~13쪽 참조

33) 破鐵塵은 1753년(영조 29)이전에 雜鐵塵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宋贊植, 1973 『李朝後期 手工業에 관한 研究』 서울대 출판부, 20쪽 참조)

34) 『일성록』 252책 정조 11년 9월 8일

壬子年(1732)間 閑雜人等 始作雜鐵塵

35) 『일성록』 326책 정조 14년 2월 14일

刀子塵市民李潤英等上言 以爲甲子年(1744)與尙衣院刀子匠 同爲設塵 載錄於市案矣

36) 『비변사등록』 118책 영조 23년 9월 8일

37) 『비변사등록』 132책 영조 33년 정월 5일

38) 『비변사등록』 108책 영조 17년 6월 10일

18세기에 창설되는 시전들은 크게 두가지 성격을 띠고 있었다. 첫째는 과철전, 도자전의 경우에서 보듯이 수공업자들이 주체가 되어 시전을 창설한 경우이다. 수공업자들은 서울의 상품화폐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종전의 소극적인 판매방식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시전을 창설하여 자신의 생산물을 판매하고자 했던 것이다. 둘째는 군문이나 권세가와 결탁한 사상들이 금난전권의 강화를 배경으로 상품판매보다는 비시전계상인들을 대상으로 금난전권을 행사함으로써 이익을 보기위하여 창설되는 시전이다. 이보혁은 이를 '난전을 잡는 일'로 표현하고 있었다. 이는 곧 금난전권에 의한 사상통제가 강화되면서 점차 상품을 판매하는 것보다는 시전에 등록하여 독점적 판매권을 확보하는 일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1747년(영조 23) 대사간 洪象漢은 이러한 契廳의 창설을 '牟利奸細輩의 이익을 독점하려는 계책'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sup>39)</sup> 이 때 창설된 시전은 대부분 사상들이 스스로 廳號를 만들어 평시서 시안에 등록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sup>40)</sup>

한편 평시서에서도 이와 같은 신전창설에 부정적이지 않았다. 평시서에서는 시전에서 걷는 收稅 이익 때문에 신전창설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있었다.<sup>41)</sup> 이와 같이 권력과 연계된 사상세력들과 평시서의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면서 18세기 전반기에 상당수의 시전이 신설되었던 것이다. 심지어 평시서의 승인을 받지 못한 사상세력들은 평시서가 아닌 다른 권력기관과 결탁하여 신전창설을 시도하기도 하였다.<sup>42)</sup>

## ② 通共政策의 추진

사상세력들의 신전창설은 미나리나 채소류등 아주 미미한 물종까지 대상으로

39) 『비변사등록』 118책 영조 23년 10월 20일

40) 『비변사등록』 178책 정조 15년 정월 28일

41) 『비변사등록』 118책 영조 23년 9월 8일

都下無賴之類 以小物種 設立廳名 平市署 爲其收稅 許錄市案 故近來加設之廳 其數甚多 以致市廳淆雜 爲弊百端 年前因聖教 自廟堂取來該署市案 一一釐正 使不得加設雜廳矣

42) 『비변사등록』 86책 영조 5년 7월 12일

都下之設置百各市肆 物分主客 錄在市案 而隨其殘盛 平均等第 以應國役者 乃是流來古規 一有變幻 輒致混淆 紛鬧之端 其不輕而重 有如此者 而近來人心巧詐 無賴遊食之輩 必欲規奪市利 百計紛拏 或至圖設新廳 而不由本署 出沒他司 誣飭呈訴 爭訟多端

로 한 것이었다. 시전을 창설한 상인들은 이를 토대로 영세상인들의 자유로운 판매를 억압하였다. 이는 시안에 등록하지 못하고 가로상에서 판매하는 영세상인들에게 막대한 타격을 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시전창설을 금하는 한편, 1741년(영조 17)에는 10년내에 신설된 시전을 혁파하라는 논의가 일기도 하였다.<sup>43)</sup>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제 혁파된 시전은 거의 없었다.<sup>44)</sup> 그러므로 시전상인들의 영세소상인 수탈은 계속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시하는 대책이 바로 금난전권의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통공정책이었다.<sup>45)</sup>

1741년(영조 17)에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시전인에 의한 난전착납금지를 제차 확고히 하였으며,<sup>46)</sup> 1764년(영조 40) 保民司 설치를 계기로 육의전을 비롯한 17개 시전에 대해서만 금난전권을 인정하고 나머지 시전의 금난전권은 부정하는 대폭적인 통공정책을 취하였다. 즉 원래 한성부에서 직접 난전을 금하던 육의전을 포함한 9개 시전은 종전대로 한성부에서 난전을 금하도록 하고, 어물전을 포함한 8개 시전은 시전상인이 직접 난전인을 捉納하도록 하였고, 나머지 시전에 대해서는 금난전권을 폐지한 것이다.<sup>47)</sup> 그리고 4년 뒤인 1768년(영조 44)에는 육의전을 제외한 모든 시전의 금난전권을 부정하는 통공정책을 취하였다.<sup>48)</sup>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초기통공정책은 물가양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시전상인의 강력한 반발을 받아 금방 철회될 수 밖에 없었다.<sup>49)</sup> 그 이후 1786년(정조 10)에도 한차례의 통공조치가 내려졌지만, 곧 바로 철회되었다. <sup>50)</sup> 이처럼 계속된 정부의 통공정책은 1791년(정조 15) 신해통공을 제외하고는 시전상인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그다

43) 『비변사등록』 108책, 영조 17년 6월 10일

44) 『비변사등록』 109책, 영조 17년 9월 19일

45) 18세기 통공정책에 대해서는 김동철, 1980 「蔡濟恭의 經濟政策에 관한 고찰-특히 辛亥通共發賣論을 중심으로」 『부대사학』 4, 이옥, 1994 「18세기말 서울 상업계의 변화와 정부의 대책」 『역사학보』 142 참조.

46) 주 44)와 같음.

47) 『비변사등록』 146책 영조 40년 11월 27일

48) 『비변사등록』 151책 영조 44년 2월 5일

49) 『승정원일기』 1287책 영조 44년 12월 14일

50) 『비변사등록』 170책 정조 11년 정월 1일, 『승정원일기』 1673책 정조 14년 2월 19일

지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시전상인의 금난전권은 상품유통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는데 가장 강력한 권한으로 기능하였다. 이에 따라 18세기에는 상인이면 누구나가 권세가나 각아문과 결탁하여 시전을 창설하려고 하였다. 그 결과 시전의 수는 크게 증가하였다. 1630년대 시전의 수는 고작 30여개에 불과했지만, 18세기 말에 오면 평시서 시안에 등록된 시전만 육주비전 7곳, 有分各廳 30곳, 無分各廳은 40곳, 女人廳 18곳, 沿江廳이 15곳, 坊曲雜廳이 10개등 총 120개로 늘어났다.<sup>51)</sup> 150여년동안 시전의 수는 4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 3. 商街확대와 店舖商業의 발달

#### 1) 三大市の 형성과 상가확대

원래 서울의 상가는 조선초기 2,000칸이 넘는 규모로 鐘樓를 중심으로 동서쪽으로, 그리고 남대문 방향으로 T자형으로 건설된 시전행랑이 유일한 상가였다. 그러나 유민집주에 따라 도성외부에 인구가 밀집하면서 17세기 후반이후 남대문밖과 서소문밖을 중심으로 한 상가가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1660년에서 1670년사이에 이 지역에는 문외미전, 문외상전, 외어물전, 생선난전 등이 계속 설치됨으로써 종로시전과 함께 서울의 중요한 상가로 번성하였다. 이 때 형성된 상가가 바로 七牌市場이었다. 칠패라는 명칭은 이곳이 우변포도청의 순라군 16패중에 남대문밖에서 蓮池까지 순라를 도는 7패가 주둔하는 곳이라는 데서 유래되었다.<sup>52)</sup>

한편 1760년 경에는 서울 東部の 於義洞 근처에 또 다른 상가가 조성되었다. 영조는 어의동을 지칭하는 東村에 민가를 많이 입주시키기 위하여 시전설치를 허가하였다.<sup>53)</sup> 신설된 東村의 시전들은 종로시전과 마찬가지로 평시서에서 관할하였지만, 이들 중에서 契 명칭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준천사에 소

51) 『홍재전서』 권164 日得錄 文學, 日得錄 市摠冊

52) 『六典條例』 권8 捕盜廳 伏處

53) 『비변사등록』 138책, 영조 36년 4월 7일

領議政 金(尙魯)所啓 東村許入市廳 聖教誠好矣 而爲慮此村之漸至空曠 欲令民家多人 則一廳猶爲不足 自該署以門外數廳 量宜從便加數許入 則尤似有效矣 上曰所奏誠是 依爲之

속시켜 관리하고 있었다.<sup>54)</sup> 이 때 조성된 상가가 바로 梨峴商街로 추정된다.<sup>55)</sup> 이처럼 18세기 후반에 이르면 서울 도성안팎의 상가는 종로 시전상가와 이현·칠패상가를 합하여 三大市로 형성되었던 것이다.<sup>56)</sup> 이처럼 18세기 후반 三大市로 파악되던 서울의 주요 상업지대는 19세기에 이르면 이 3대시에 소의문(서소문)밖 시장이 덧붙여져 4개 시장으로 확대되기에 이른다.<sup>57)</sup> 종로를 중심으로 한 시전의 위치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의 <그림 1>과 같고,<sup>58)</sup> 각 시전의 위치와 판매물종을 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종로의 시전상가는 주로 궁궐이나 관아, 그리고 양반 사대부가에서 필요한 사치품이나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장이었다. 그러므로 주로 대낮에 거래가 이루어 졌다. 종로 중심가의 시전상가는 대체로 2층 목조기와집이었고,<sup>59)</sup> 상층은 창고, 하층은 점포로 사용되었다. 또한 건물은 立塵의 경우 1房에서 7房으로 구분되어 각방의 면적은 10間으로 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10분하여 영업에 종사하였다. 立塵외의 시전도 대체로 5房 내지 6房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된다.<sup>60)</sup>

54) 『비변사등록』 138책 영조 36년 5월 16일 「濬川司節目」

東村新入塵契中 以契爲名處 依燠造契例 屬之本司 分出役丁 以爲濬渠之地爲白齊

55) 칠패시장의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료가 풍부하나, 梨峴시장의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자료가 확실하지 않다. 앞의 자료에서 나오는 東村은 於義洞지역을 일컫는 것으로서, 梨峴지역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東村에 설치된 시전을 바로 이현상가의 표시로 잠정적으로 추정하였다. 東村이 어의동지역이라는 점은 『漢京識略』 各洞 東部條 참조.

56) 朴齊家, 『貞莢集』 권 3, 詩集 城市全圖詩

梨峴鐘樓及七牌 是爲都城三大市

57) 『東國輿地備考』 권2 漢城府 場市

凡有四處 鐘樓街上 梨峴 七牌 昭義門外

58) 기왕의 연구에서 종로시전의 위치도는 모두 『경성부사』에 표시된 그림을 그대로 전제한 것이었다. 본고의 그림은 『東國輿地備考』의 市塵조에 나타난 각 시전의 위치와 李重華의 『京城市塵의 變遷』에서 「靑邱山河都城圖」의 서울시전배치도를 참고한 내용을 참조하여 도시한 것이다.

59) 이우성, 임형택 편, 『이조한문단편집 上』 馬駟傳

60) 劉元東, 1977 『韓國近代經濟史研究』 一志社 149-151쪽



종로의 시전상가와 달리 이현과 칠패, 소의문밖 시장은 주로 새벽녘에 거래가 활발하였다.<sup>61)</sup> 이용자들도 서민들이 많았다. 남대문 밖에서 번성한 칠패 시장은 어물유통의 중심지였으며, 이현시장은 도시 근교에 상업적 농업으로 재배된 채소들이 주로 팔리는 시장이었다. 18세기 후반 이현, 칠패시장은 어물판매에 있어서는 내·외어물전보다 유통물량이 10배에 달할 정도였다.<sup>62)</sup> 이현, 칠패시장은 어물과 채소거래에 있어서는 종로의 시전을 능가하는 시장으로 성장하였던 것이다.

한편 이 시기에는 동일한 시전에 속해있으면서 판매처가 확대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었다. 예컨대 상·하미전 두곳만 있었던 미전은 남문미전, 마포미전이 신설되어 네곳으로 늘었고, 과일을 판매하는 隅臺은 松峴, 貞陵洞, 典洞, 門外의 上·下 隅臺과 南門안의 隅臺등 여섯 군데였으며, 잡화를 판매하는 床臺은 12곳으로 확대되었다.<sup>63)</sup> 이러한 경우의 대표적인 사례가 돼지고기를 판매했던 猪肉臺의 경우였다. 市案에 오를 당시 저육전의 판매처는 6-7곳에 불과했다. 그러나 1712(숙종 38)에는 판매처가 70-80곳으로 크게 증가하였다.<sup>64)</sup>

61) 『京都雜誌』 市舖

凡趨市者 晨集于梨峴及昭義門外 午集鐘街 一城之所需者 東部榮 七牌魚

62) 『各臺記事』 地, 乾隆 11년(1781) 4월 일

大抵梨峴七牌兩處無非亂臺 奪利都庫隱賣之類 甚至於執房行貨買賣 十倍於本臺

63) 『萬機要覽』 財用篇 5, 各臺 無分各臺, 『漢京識略』 市臺

64) 『승정원일기』 472책 숙종 38년 9월 28일

猪肉臺則市案所載者 不過六七坐 而近來漸盛 幾至七八十坐 以此懸房失利 典僕輩呼冤



〈표 1〉 조선후기 시전의 위치와 판매물종

1) 六矣塵

시전이름	구역	위 치	판 매 물 종
線塵(立塵)	10	광통교주변	중국산 비단: 貢緞, 大緞, 宮綉, 生綉, 雪漢綉, 日光緞, 月光緞, 雲紋大緞, 梅竹緞, 가계綉, 龍紋甲紗, 相思緞, 通海綉, 壯元綉, 葡萄大緞, 조개비단, 金線緞, 兩和緞, 雪紗, 氷紗, 皓老緞, 萬壽緞, 羽緞, 光月紗, 아룡緞, 八兩綉, 雙紋綉, 黑苧紗, 藍縹羅 등
綿布塵(銀木塵, 白木塵)	9	광통교와 종루 주변	무명과 은: 康津木, 海南木, 高陽냥이, 江냥이, 高賈木, 軍布木, 賈物木, 巫女布, 天銀, 丁銀, 西洋木, 西洋綉 등
綿綉塵	8	종루 주변	국산 明綉
紙塵	7	남대문로 1가 주변	각종 종이류: 白紙, 壯紙, 大好紙, 雪花紙, 竹靑紙, 蟬翼紙, 花草紙, 白綿紙, 霜花紙, 咨文紙, 初塗紙, 上疏紙, 川連紙, 毛土紙, 毛綿紙, 粉唐紙, 宮箋紙, 詩軸紙, 菱花紙 등
苧布塵	6	종로 3가근처	모시류:
內·外魚物塵	내(5) 외(4)	내-종루 주변 외-서소문밖	佐飯, 鹽魚, 乾魚類: 北魚, 貫目魚, 骨獨魚, 民魚, 石魚, 통대구, 광어, 문어, 가오리, 전복, 해삼, 가자미, 곤포, 미역, 다시마, 파래김, 우뭇가사리 등
布塵	5	남대문로 1가	무명: 농포, 세포, 중산포, 함흥오승포, 심의포, 육진장포, 안동포, 계추리, 해남포, 왜포, 당포, 생계추리, 문포, 조포, 영춘포, 길주명천세포 등,
靑布塵	5		중침, 세침, 수바늘, 다홍삼승, 청삼승, 녹전, 홍전, 분홍전, 삼승고약, 공단고약, 감투모자, 회회포, 민강사당, 오화당, 연환당, 옥춘당 등

(\*) 靑布塵은 원래 내어물건과 합하여 하나의 주비로 육의전에 포함되었지만, 1794년(정조 18)갑인 통공으로 육의전에서 제외됨.

2) 有分各塵

煙草塵	3		西草 및 각종의 연초
生鮮塵	3	종로 서쪽	민어, 석어, 석수어, 도미, 준치, 고등어, 낙지, 소라, 오징어, 조개, 새우, 전어 등
床塵 12처 望門床塵 新床塵 東床塵 壽進床塵 布床塵 鐵床塵 筆床塵 南門床塵 鹽床塵 屏門床塵 貞陵洞床塵 銅峴床塵 紙床塵	3 2 1 1  3 2 1 1 1 1 1 1 1	의금부 망문앞 안국방 주변 종루 남쪽 수진방 종로 포전앞 철물교 주변 필동주변 남대문 근처 염전 앞  정릉동 주변 구리개 지전 앞	면빚, 참빚, 얼레빚, 싹지, 줌치, 허리띠, 총전, 보료, 모담자, 간지, 주지, 당주지
米塵 上米塵 下米塵 門外米塵 西江米塵 麻浦米塵	3 3 2  2	철물교 서쪽 철물교 동쪽 남대문 밖 서강 마포	하미, 중미, 극상미, 참쌀, 좁쌀, 기장쌀, 녹두, 청태, 적두팔, 마채, 중태, 기름태 등
雜穀塵	3	철물교 서쪽	미곡이외의 잡곡 판매
鎗器塵(鉢里塵)	2	어물전 뒷쪽	각종 유기류 판매: 조반기, 대접, 주발, 탕기, 보시기, 증지, 바리, 발당기, 쟁침, 양푼, 쟁반, 접시, 향로, 요강, 촛대, 조치, 타구 등
銀麴塵	2	笠塵 병문근처	누룩판매
衣塵(古着塵, 닝마진)	2	종루 주변	의류대여업 및 헌옷 판매
棉花塵(綿子塵)	2	광통교 주변	면화등 솜 판매
履塵(鞋塵)	2	종루를 비롯한 각처에 散在	각종 가죽신 판매. 油釘鞋는 종루의 혜전에서만 판매
樺皮塵	1	종루의 동쪽	각종 채색의 물감과 중국산 과일 판매
茵席塵	1	수진방	왕골과 부들로 만든 돛자리류 판매
眞絲塵	1	의금부 주변	중국실과 국산 실, 갓끈, 주머니끈 등 판매
淸蜜塵	1		각종 꿀 판매
京鹽塵	1	梨峴	소금, 찢뚜기젓, 황새기젓등 판매

鬚髻塵	1	내전은 광통교, 외전은 서소문밖	부인들이 머리에 얹는 가발류 판매
內長木塵	1	여러 곳에 산재	가옥건축용 목재 판매
鐵物塵	1	여러 곳에 산재	주로 주물한 각종 철물 판매
煙竹塵	1	여러 곳에 산재	담뱃대와 재떨이 판매
內外匙箸塵	1	내전은 종루주변 외전은 서소문밖	유기로 제작한 수저류 판매
牛塵	1		소판매
馬塵	1	동대문 안쪽에 소재	마필판매

### 3) 無分各塵

外長木塵	성밖에 소재	가옥건축용 목재 판매
菜蔬塵	종루와 칠패에 소재	각종 채소나 나물류 판매
隅塵(모전) 松峴隅塵 貞陵洞隅塵 門外隅塵 上隅塵 下隅塵 典隅塵	큰곳은 6처 안국동 근처 정릉 근처 남대문밖 주변  전동 주변	각종 과일 판매: 청실뇌, 홍실뇌, 건시, 홍시, 조홍시, 밤, 대추, 호도, 잣, 포도, 경도, 오얏 석류, 유자, 복숭아, 용안, 여지, 당대추
惠政橋雜塵	혜정교 옆	양산, 편박(밭), 지거(햇불) 등을 판매
貰物塵	여러 곳에 산재	각종 혼인이나 상례시에 필요한 각종 물건이나 그릇 등을 대여함. 매건의 대여료는 10전미만
涼臺塵	종루 주변	갓을 만드는 양태 판매
內外戰笠塵	내전은 유전교 외전은 돈의문밖에 소재, 기타 여러 곳에 산재	군병들이 쓰는 갓인 우모전립을 판매
雜鐵塵	여러 곳에 산재	적쇠, 못, 솥등 각종 철물 판매
鹽塵		소금판매
針子塵		바늘류 판매
內外粉塵	내전은 종루주변 외전은 서소문밖	화장품 판매. 여인이 판매를 담당(여인전)
족두리塵		족두리 및 아녀자의 패물류 판매
生雉塵	생선전의 병문에 소재	평고기 판매

網巾塵	아침 서소문밖, 낮에는 종루주변에서 판매	망건판매
藁草塵		지붕 있는 벧짚, 울타리 엮는 싸리 등을 판매
履底塵(鞋底塵, 昌塵)	笠塵洞 주변	가죽신발의 밑창을 판매
豬肉塵	도성안에 7-80처	돼지고기 판매
笆子塵		울타리를 엮는 밭을 판매
蛤灰塵		조개류 판매
箭鏃塵	동대문 안	화살촉 판매
刀子塵	새벽에 종루주변에서 노 점을 벌여 판매	각종 패물류 판매: 용감, 봉감, 서복감, 간화 감, 창포감, 민죽질, 쪽비녀, 은가락지, 옥가 락지, 밀화지환, 금괘호박 가락지, 금가락지, 노리개류(대삼작, 소삼작, 옥나비, 금벌이, 산 호가지, 밀화불수) 장도류(우장도, 대모장도 등) 각종 노리개
鹽水塵(良水塵)		두부를 만들 때 필요한 간수판매
種子塵	여러 곳에 산재	각종 채소의 종자 판매
南門外 醢塵	남대문 밖	젓갈류 판매
漆木器塵(櫛塵)	광통교 소재	각종 칠목기와 례, 장농 판매
上下木器塵	상전은 육조거리 하전은 梨峴	목기류 판매
懸房	도성내외에 총 23곳	쇠고기 판매
그림塵	광통교 아래	각종 그림 판매:
草物塵	서소문 밖	왕골이나 벧짚으로 만든 물건, 나막신 등 판매
藥塵	구리개 주변	각종 약재 판매:인삼, 사삼, 현삼, 황련, 황 금, 황백, 진피, 청피, 대북피, 감초, 자초, 하 고초, 우황, 타황, 구황, 웅담, 구담, 사담, 칩 향, 정향, 당사향, 용뇌, 용안, 용골, 소합환, 광제환, 태을환, 소침환, 청심환, 안신환, 포 룡환, 만응환, 운모고, 우황고, 오독고, 신이 고, 제중단, 옥추단, 벽운단, 자금단, 옥설, 금 설, 진주설, 금박, 은박 호박설, 민강, 꿀병, 금전병, 녹용고, 경옥고 등
鷄塵	광통교 주변	닭 판매
鷄兒塵	광통교 계전과 이웃함	계란 판매
卜馬諸具塵		짐을 싣는 말에 필요한 마구류 판매
內外貫器塵		그릇대여점
繩鞋塵		미투리, 짚신판매
上下木器塵		목기판매

籐麩	광통교 주변	말안장등 마구 판매
白筭麩		백립(가는 대나무로 틀을 짠위에 베를 썬워 만든 것으로 포립이라고도 함)판매
草筭麩		초립(판례를 막 끝낸 아동들이나 관아의 심부름꾼, 광대등이 쓰는 챙이 짧은 갓)판매
黑筭麩		흑립(검은 색 갓)판매
橋子麩		교자를 판매
白糖麩	각처에 산재.	엿 종류판매:아동들이 엿판을 지고 길거리에서 팔기도 함
佐飯麩(4곳) 生鮮좌반전 上米좌반전 內魚物좌반전 外魚物좌반전	여러 곳에 산재	조린어물등 반찬 판매
繩鞋麩		짚신판매
月外麩		
帽子麩		중국산 모자 판매
徵麩		소나 말의 발굽에 박는 징 판매
毛衣麩		갓옷 판매
折草麩		折草 판매
炬子麩		햇불종류 판매
牛肪麩		소에서 나오는 기름판매
板子麩		판자류 판매
扭籠麩		바구니류 판매
蓑笠麩		도롱이와 삿갓판매
麻浦鹽麩	마포	소금판매
麻浦柴木麩	마포	목재류 판매
麻浦雜物麩	마포	잡화판매
麻浦良水麩	마포	두부를 만들 때 필요한 간수판매
土亭藁草麩	마포의 토정지역	지붕 있는 벧짚, 울타리 엮는 싸리 등을 판매
土亭柴木麩	마포의 토정지역	땃감판매
豆毛浦柴木麩	두모포	땃감판매
龍山柴木麩	용산	땃감판매
龍山小柴木麩	용산	땃감류 판매

瓮里蛤灰廩	용산의 용리지역	조개류 판매
西江柴木廩	서강	땃감판매
黑石里柴木廩	서강의 흑석리지역	땃감판매
뚝섬柴木廩	뚝섬	땃감판매
뚝섬小柴木廩	뚝섬	땃감류 판매

典據: 『萬機要覽』 財用編 市廩, 『東國輿地備考』 권2 漢城府 市廩, 『備邊司曆錄』 166책, 정조8년 3월 21일 「各廩市民錢貨散貨別單」

또한 이 시기 서울의 상가는 독립된 건물이나 假家를 짓고 영업하지 않고 <표 1>의 白糖廩이나 刀子廩사례에서 보듯이 상점없이 노점이나 행상의 형태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외에도 미전이나 어물전의 경우도 시전 상인에게 물건을 떼어다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에게 판매하는 '呼唱行賣之類' 등의 행상이나 街路坐市를 벌여 판매하는 소매상인들도 많았다. 이른바 街路雜市가 바로 그러한 유형의 저자인 것이다.<sup>65)</sup>

경강지역도 조선후기 상품화폐경제의 성장에 따라 상업중심지로 변하여, 이곳에는 총 15개의 시전이 설치되었다. 또한 상업중심지도 계속 확대되어, 18세기 이전에는 3강, 18세기 중엽에는 5강, 18세기 후반에는 8강, 19세기 전반에는 12강으로까지 불리웠다. 이처럼 경강상업이 번성하고 있음은 18세기 후반 삼강에 설치된 술집이 600-700여곳이었고, 여기서 술제조에 소비되는 미곡만도 1년에 수만석을 넘고 있다는 기록이나, 술을 빚어놓은 항아리가 천여개에 달하는 집도 있었다는 기록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경강변은 새로운 상업중심지로서만이 아니라 유흥가로서의 모습도 띄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경강에 시전이 대거 설치되어 도성내부를 능가하는 상업중심지로 성장하게 되자 도성에서 서강으로 가는 애오개길(아현동길)과 용산으로 가는 약점현길이 당시 서울에서 가장 변화한 도로가 되었다.<sup>66)</sup>

65) 『비변사등록』 240책, 철종 4년 1월 18일

漆木器廩市民以爲 街路雜市之賣買 新木器者 一切嚴禁事也 雖非許禁之物 新舊之器 各自有其市 以無相侵奪之意 亦爲申飭

66) 경강지역의 상업발달에 대해서는 高東煥, 1993 『18,19세기 서울 京江地域의 商業發達』 서

또한 서울 도성 안팎에는 뿔감시장도 번성하였다.<sup>67)</sup> 17세기 후반이후 서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히 난방용, 취사용 연료인 뿔감소비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한강상류에서 벌채된 목재가 집하되는 독섬지역에는 4-500호가 모두 뿔감판매를 업으로 삼고 있었으며,<sup>68)</sup> 서부 용산방 토정리에도 뿔감시장이 번성하였다.<sup>69)</sup>

이상에서 보았듯이 18세기 서울의 상가는 종로의 시전상가나 이현, 칠패 등의 상가만이 아니라 가로상에도 다양한 雜市와 뿔감시장이 형성되었고, 경강지역도 수로교통의 중심지라는 교통상의 잇점을 극대화하여 상업중심지로 번성함으로써, 서울의 상업지대가 확대되고 있었던 것이다.

## 2) 店鋪商業의 발달

18세기 상업변동에서 이와 같은 상업지대의 확대와 더불어 특기해야 할 사실은 시전상업외의 점포상업도 발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19세기 초에 작성된 『東國輿地備考』에는 市廛과 다른 점포상업을 특별히 舖肆로 독립시켜 기술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懸房, 藥局, 書畫肆, 冊肆, 金橋貫家를 들고 있다.

懸房은 소를 잡아 고기를 판매하는 곳으로, 泮人들인 성균관 典僕들이 판매를 주관하였다. 고기를 매달아 판매하기 때문에 현방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중부에는 하량교, 履塵, 승내동, 향교동, 수표교등 5곳, 동부에는 광례교, 二橋, 왕십리등 3곳, 서부에는 태평관, 소의문밖, 정릉동근처 병문, 冶鑄峴, 육조앞, 마포등 7곳, 남부는 광통교, 저동, 회현동, 의금부등 4곳, 북부는 의정부, 수진방, 안국방등 3곳이 있었고, 여기에 성균관에 소재한 현방을 합하여 총 23곳에서 푸줏간 영업을 하고 있었다.<sup>70)</sup>

올대 박사학위논문참조

67) 『비변사등록』 174책 정조 13년 윤5월 12일

近來松政解弛 柴馱之入東南城門者肆然 以生松枝作束 而不問有誰何者 至於上遊柴商以松作爲槽拙 全船來泊於京江者有之云

68) 『비변사등록』 89책 영조 7년 6월 1일

自前羸島居民 無他生理 賣柴爲業 一邊酬應平市署公用 家家設廛 專以此資生矣(중략)四五百戶 上中下民人等生理 一朝因一昌悌而見奪

69) 『비변사등록』 88책 영조 6년 11월 7일

70) 『東國輿地備考』 권2 漢城府 舖肆

약국은 주로 현 읍지로 입구인 구리개(銅峴)근처에 집중적으로 분포하였다.<sup>71)</sup> 약국은 단지 병자에게 약을 지어주는 역할만을 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시정인들의 약속의 장소, 만남의 장소로서도 기능하였다.<sup>72)</sup> 그러므로 약국은 市井의 소문들이 발생하는 근원지이면서, 그러한 소문이 빠르게 확산되는 공간이기도 했다. 조선후기 발생하는 정치적 변란사건의 대부분에는 주도자들의 모의장소나 만남의 장소로서 약국이 활용되는 것도 이러한 사정 때문이었다.<sup>73)</sup> 이러한 약국과 비슷한 기능을 했던 점포가 煙肆(담배가게)였다. 담배가게에서 講讀師들은 청중들을 대상으로 소설을 읽어주는 장소로도 제공되고 있었다.<sup>74)</sup>

그림판매점인 書畫肆는 대광통교 서남쪽 개천변에서 각종의 그림과 글씨를 판매하였으며,<sup>75)</sup> 책을 판매하는 冊肆는 정릉동 병문, 육조앞 두 곳에 있었는데, 주로 四書三經과 百家諸書를 판매하였다.<sup>76)</sup> 이 시기에는 직업적으로 책만을 판매하는 책장수도 등장하였고, 그중의 일부는 조선후기 한문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하였다.<sup>77)</sup> 여러 곳에 산재한 金橋蕢家에서는 종친 및 공주나 왕주의 舊第를 혼인을 앞둔 신부집에 빌려주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었다.

이와 같은 점포상업외에도 18세기 서울은 도시상업의 발달로 새로운 기능을 지닌 영업들을 출현시켰다. 대표적인 것이 서비스업의 성격을 갖는 주점, 음식점, 기방, 색주가 등이었다. 남대문에서 종로에 이르는 거리에는 주점, 팔죽집 등 음식점이 즐비하였으며, 서울 종루거리에는 친냥짜리 靑樓가 등장할 정도로 색주가가 번창하였다.<sup>78)</sup> 서울지역에서 대표적인 색주가는 경강의 마

71) 위와 같은 조.

72) 이문규, 1995 『조선후기 서울 시정인의 생활상과 새로운 지향의식』 『서울학연구』 5

73) 영조 28년의 이양계사건, 정조 2년 서명완 등의 역모사건에서 약국은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다. 『영조실록』 권 76 영조 28년 4월 기유, 『정조실록』 6권 2년 7월 을사 참조.

74) 李德懋, 『靑莊館全書』 권20, 雅亭遺稿 12, 銀愛傳

75) 『한양가』

76) 『東國輿地備考』 권2 漢城府 舖肆

77) 이우성, 임형택편, 1978 『李朝漢文短篇集』 중, 鬻書賣生, 일조각

78) 이우성, 임형택편, 1978 『李朝後期漢文短篇集』 상, 美僧, 일조각



포지역과 홍제원, 남대문밖 잼배, 탑골공원 뒷편, 수은동 등지였다. 이러한 음식업 업소중에서도 '군침'이라는 주점은 평양의 냉면, 개성의 산적따위를 팔았고, 밤에는 불을 켜놓고 영업을 하였다고 한다. 평양과 개성의 특미가 서울 주점의 메뉴로 등장할 정도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변창했던 주점에서는 수십 가지 안주를 제공하였고, 젊은이들은 술값으로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와 더불어 쇠고기와 어물의 절반이상이 주점의 안주로 소비되어 서울 시민의 찬거리값이 폭등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주점과 음식점의 발달, 즉 상업적 외식업의 발달은 인구의 밀집과 유동을 전제로 한 조선후기 도시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의 하나였다.<sup>79)</sup>

이와 같은 점포상업, 주점의 번성과 더불어 이 시기 새로 나타나는 영업은 노동력청부를 주로 하는 영업이 번성했다는 점이다. 18세기에는 생계를 위해 서울로 몰려든 유민들이 서울에 집적됨에 따라 이들을 노동력으로 동원하여 이루어지는 馬契, 運負契 등의 荷役運輸業<sup>80)</sup> 과 겨울에 얼음을 저장했다가 여름에 판매하는 藏氷業<sup>81)</sup> 등도 이 시기에 독립적인 영업분야로 발달해 간 것이다. 이와 같은 점포상업과 각종 영업의 번성은 시전상업의 변화 못지않게 18세기 서울의 상업구조를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 4. 民營手工業과 商業的 農業의 발달

##### 1) 民營手工業의 발달

서울은 국내 최대의 소비도시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에서 국가에서 필요 한 주요 수공업제품을 조달하는 생산도시이기도 하였다. 조선초기 관영수공업 체제하에서 주요 수공업공장들은 대부분 관청에 소속되어 서울에 소재하였다. 15세기 후반 『경국대전』에 등록된 서울의 관영수공업장은 총 30여개소였다. 이에 소속된 장인들수도 2,800여명이었고, 이들은 30개 수공업공장에서 129

79) 강명관, 1994 「조선후기 서울과 한시의 변화」, 『문학작품에 나타난 서울의 형상』 한샘 출판사

80) 荷役運輸業에 대해서는 高東煥, 1993 『18,19세기 서울 京江地域의 商業發達』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참조.

81) 高東煥, 1994 「조선후기 장빙역의 변화와 장빙업의 발달」, 『역사와 현실』 14 참조

종의 일을 맡고 있었다. 이로써 보면 종로시전상가를 중심으로 한 지역은 조선전기에는 최대의 공업단지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종이나 그릇 등 넓은 작업공간이 필요한 분야는 도성밖에서 제조되었지만, 음식이나 의복, 장신구, 기구 등은 대부분 궁궐이나 도성안에서 제조되었다.

이와 같은 관영수공업체제는 무기화약류나 도자기의 제조분야를 제외하고는 17세기이후 점차 동요되어 해체되기에 이른다. 1785년(정조 9)에 편찬된 『大典通編』에 의하면 30여개의 관영수공업 가운데서 사삼시, 전합사, 소격서, 사운서, 귀후서 등이 관아 자체가 없어지고, 또 내자시, 사도시, 예빈시, 제용감, 전설사, 장원서, 도화서, 사포서, 양현고 등 10개 관아에 속해있던 작업장에는 장인들은 한명도 없었고, 그 밖의 작업장에서도 장인의 명목은 있었으나 실체는 거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大典通編』이 간행된 18세기말 시점이 아니라 이미 『續大典』이 간행된 1744년경에 이미 현실화된 사실이었다고 『大典通編』에는 특기하고 있다.<sup>82)</sup>

여기서 보듯이 18세기에는 관영수공업체제가 완전히 해체되고 민영수공업에 의한 시장생산이 크게 성장하였다. 민영수공업은 대동법의 실시를 계기로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대동법 실시이전에 宗廟, 社稷, 各陵寢, 諸上司에서 필요한 水鐵器 십여종을 海西에서 직접 제조하여 進拜하였는데, 대동법이후에는 황해도에서 돈을 받고 공인들이 이를 서울 주변의 수철장으로부터 구입하여 조달하고 있다.<sup>83)</sup> 이처럼 대동법 실시는 서울에서의 수공업생산을 크게 발전시킨 계기였던 것이다.

그러면 이처럼 발달한 서울의 민영수공업 현황을 『東國輿地備考』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東國輿地備考』의 匠人條에서는 수공업장인으로 金匠, 銀匠, 玉匠, 豆錫匠, 木手, 石手, 小木匠, 大丁(鑄鐵造刀子雜物者 俗稱大丁), 造主匠, 棺槨匠, 毛衣匠, 靛粧匠, 鑄字匠, 熟手, 刻手匠, 粧冊匠, 漆匠 등을 꼽고 있다.

82) 『大典通編』 工典, 京工匠

83) 『續大典』 工典 京工匠

水鐵匠人 元額未充定者 隨現即定(開雜人設爐冶處 本曹擲奸錄案 軍兵則不可移定匠額 依亂塵例 移法司科罪 0舊例 宗廟社稷各陵寢諸上司所用水鐵器 本曹卜定海西而進拜 詳定後 自本道其價米收納宜惠應 定貢人出給 使之擔當備納 凡十一種之器)

또한 수공업작업장인 匠房은 金房, 銀房, 玉房, 豆錫房, 綾羅房, 周皮房, 弓房, 矢房, 紗帽房, 角帶房, 刀子房, 眼鏡房, 石鏡房, 毛衣服, 筆房, 笠房, 烟竹房 등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들 수공업장의 위치는 대부분 종로 시전상가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었다. 예컨대 銀房의 都家는 백목전도가의 남쪽과 내어물전 북쪽의 향도정동 두 곳에 있었으며, 豆錫房의 도가는 月乃塵 남쪽에 위치하였다.<sup>84)</sup> 銀房이 은을 판매하는 백목전도가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로 보건대 당시 수공업작업장은 대부분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상점근처에 자리잡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관영수공업장에 소속된 장인들도 이 시기에는 민간을 대상으로 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공조 소속의 耳掩匠은 耳掩廳을, 공조 소속의 冶匠은 雜鐵廳을 직접 운영하였으며, 毛氈契人들도 毛氈橋 근처에 基地를 점유한 후에 이 곳에서 毛氈을 제조하여 일반에게 판매하고 있었다.<sup>85)</sup> 또한 瓦署에서도 私匠들이 기와를 구워 민간에 판매하였고,<sup>86)</sup> 造紙署의 紙匠들도 국가에 납품하는 것 말고도 소비자에 판매하기 위해 종이를 생산하였다.<sup>87)</sup> 이외에 공조의 모의장, 상의원의 류장이나 도자장등도 합법적으로 수공업생산품을 생산하여 사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였으며, 공조의 수철장은 전국적인 범위에서 釜鼎의 생산과 판매를 독점하였다.<sup>88)</sup>

이처럼 민영수공업과 더불어 관청 소속의 匠人들도 시장을 향한 생산을 활발하게 전개함에 따라 점차 서울의 수공업도 활성화되어 갔다. 이와 같은 서울의 수공업공장이 어떻게 분포되고 있는지는 현재까지 남아있는 地名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다. 관철동에는 금, 옥, 빨 등으로 망건의 당줄을 꿰는

84) 『東國輿地備考』 권2 한성부 匠房, 匠人

85) 『貢弊』 5책 毛氈契人

矣等毛氈契乃是國初設立之契 若自京兆成給立案於矣等 毛氈橋大路之傍 占得基地 造作毛氈 許多國役 擔當進拜 故基前居民與矣等 無相侵犯 家自家基自基 今至累百年之久 而呼稱毛氈橋 亦入於輿地勝覽矣 近來人心不古 矣等之基臺近處居民 稱以家前 驅迫矣等 或乘夜掘土爲壑 灌水成川 事不得接足 將未免失巢之鳥 此實莫大之痼弊是乎 且各殿宮褥漿及宗社以下石磬漿駕前馬彥赤漿 各衙門方席漿 矣等無不擔當 故自國初設契 滓餘毛段 戰笠匠來買於矣契矣

86) 『승정원일기』 152책 효종 9년 9월 25일

87) 『漢京識略』 各洞

88) 宋贊植, 1973 『李朝後期 手工業에 관한 研究』 서울대 출판부 44-45쪽

관자제조장이 있었으며, 철물교근처는 칼, 숟, 문고리 등 철물을 다루는 장인들이 영업하였다. 현재의 종로 2가와 공평동근처는 각종 낫그릇을 만들어 판매하였는데, 지금까지 바리동이라는 지명이 남겨져 있다. 백목전 도가가 위치한 서린동지역은 금방, 은방, 옥방들이 집중되어 있었고, 모자, 귀마개 등을 제조하는 이업장도 이 근처에 작업장을 소유하고 있었다. 또한 도성 밖인 신영동, 부암동, 평창동 등지에는 훈조계가 있어 왕실이나 서민들에게 메주를 만들어 공급하였으며, 부암동에는 숯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또한 인왕산 기슭의 누상동, 누하동에서는 담배쌈지를 제조하여 판매하였고, 통의동과 창성동은 땃골이라 하여 허리띠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태평로 1가의 쳇골에는 체를 제조하는 장인이, 목정동의 풀뭇골에는 쇠를 가공하던 사람들이, 살았으며, 중구의 저동에는 모시전골로 모시전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었다. 한편 용산지역에서는 주성리, 수철리, 옹리 등의 지명으로 보아 쇠를 가공하거나, 옹기를 제조하는 장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였으며, 와서가 있어서 기와제조를 담당하였다. 아현동에는 낫그릇 제조장인 유기전 즉 바리전이 위치하였고, 마근동에는 망건제조장이, 대현동에는 망건, 당줄, 감투를 만드는 집이 많았다. 그리고 성동구 성수동 일대의 수철리는 서강의 수철리와 함께 무쇠를 다루어 숟, 칼, 낫 등을 제조하였고, 뚝섬에는 속칭 숯광골이라 불리었는데, 땃목으로 내려온 목재로 숯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sup>89)</sup>

## 2) 商業的 農業의 발달

17세기 후반이후 급속히 상업도시로 성장함에 따라 서울에서는 상업적 농업도 크게 성행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채소, 과수농업과 약초재배업이었다. 채소농업은 동대문밖과 서대문밖의 미나리밭, 독립문 주변의 무, 배추,<sup>90)</sup> 왕십리의 무우, 살곶이다리의 순무, 石橋의 가지, 오이, 수박, 연희궁주변의 고추, 부추, 해채, 청파지역의 미나리, 이태원의 토란등이 가장 유명했다.<sup>91)</sup> 이외에

89) 최완기, 1995 『조선시대 서울의 경제생활』 49쪽

90) 李春寧, 1989 「서울의 農業地帶小考」, 『郷土서울』 47호, 21쪽

91) 朴趾源 『燕巖集』 別集, 穉德先生傳

도 마늘, 파, 부추, 호박, 수박, 연초 등도 교외지역에 재배되고 있었다.<sup>92)</sup> 이와 같은 채소농업은 미곡농사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다. 19세기 초 우하영에 의하면 “미나리 2마지기를 심으면 벼 10마지기 심어서 얻는 이익을 올릴 수 있고, 채소 2마지기를 심으면 보리 10마지기를 심어 수확하는 것과 같은 이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였다.<sup>93)</sup> 또한 정약용도 “서울안팎과 변화한 큰 도시에 파밭, 마늘밭, 배추밭, 오이밭 따위는 논 4마지기의 땅에 수백냥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상업적 농업의 이익을 上之上畚의 벼농사에 비해 10배 이상의 이익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sup>94)</sup>

이와 같이 상업적 농업의 이익이 커지자, 18세기 이후에는 도성내외의 채소밭도 크게 증가하고, 그 규모도 확장되었다. 1725년(영조 1) 살곶이벌에 있었던 司僕寺 屯田도 채소밭으로 변했으며,<sup>95)</sup> 어영청에서 관할하는 동대문 밖의 채소밭도 생겨났다.<sup>96)</sup>

또한 도성 밖 사포서에서 관할하는 채소밭은 30여결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였다.<sup>97)</sup> 이러한 채소밭들이 司僕寺, 司圃署, 御營廳등 관청에서 경영하는 것이긴 해도, 당시 상업적 농업으로 전개된 채소농업의 발전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한편 龍興舊宮이 불타기 전 인가가 즐비했던 도성안 지역에도 사대부들이 채소밭을 경영하고 있었다.<sup>98)</sup> 사대부들도 상당한 이익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상업적 농업에 참여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도성내부에서도 상업적 농업이 활성화되자, 1744년(영조 20)에 편찬된 『續大典』에는 “京城안에서 花田 및 內農圃, 芹田을 제외하고 起耕하는 자는 杖 100에 처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도성내의 농업을 억제하였다.<sup>99)</sup>

92) 『漢京識略』 各洞

93) 禹夏永, 『觀水漫錄』 輕稅勸農之策

94) 丁若鏞, 『經濟遺表』 地官修制 田制十一 井田議 三

95) 『비변사등록』 77책 영조 원년 3월 9일

96) 『비변사등록』 138책 영조 36년 5월 16일 「瀋川司節目」

97) 『비변사등록』 168책 정조 10년 정월 5일

司圃署外圃貢人 以爲本署劃給田畝三十餘結 以爲各殿各宮 各樣菜蔬供上矣

98) 『비변사등록』 138책 영조 36년 4월 1일

傳曰 (중략) 本宮(舊闕-인용자)南牆外 古則人家稠密 今則便成菜田 龍興舊宮 若在野村 尋常寒心 大抵士夫 嫌其隱僻 便得要處於基地 菜田爲業 此莫重都城之地 爲士夫者 舉一兩得也

그러나 이 조처는 도성 안에서 상업적 농업을 영위하던 사람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정부에서도 1748년(영조 24)에는 民家에서 대대로 경작하던 토지에 대해서는 계속 경작을 허용하고, 다만 新田耕作만을 금하도록 함으로써,<sup>100)</sup> 기존에 도성안에서 상업적 농업을 영위했던 자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한편 이 시기에는 채소농업 뿐만 아니라 紅花, 紫草와 같은 약초도 상업적으로 재배되었다. 흔히 어혈 등을 푸는데 쓰이는 홍화는 독립문 주변에서 재배되었는데, 이 일대를 홍화동으로 불렀고, 충청로에서 만리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약고개라 했는데 약초재배가 성행한 까닭이었다. 또한 상업적으로 과일나무를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층들도 생겨났다. 인왕산 기슭 누각동이나 이화동에는 살구나무, 교북동에는 살구, 복숭아, 감나무, 창신동에는 복숭아, 앵두나무, 세검정에는 자두나무가 많았고, 동숭동에는 잣나무가 많아서 잣골이라는 이름이 전해지고 있다.<sup>101)</sup> 이외에도 18세기에는 각종 화초나 분재를 취미로 삼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전문적으로 길러 판매하는 자들도 생겨났다.<sup>102)</sup> 이처럼 18세기 상업적 농업은 채소류나 약초류에 그치지 않고 과일과 꽃재배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있었다.

## 5. 商圈의 확대와 유통체계의 변화

### 1) 서울 商圈의 확대

조선후기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은 육상 뿐만 아니라 해상의 교통도 크게 진전시켰다. 그 결과 육지의 장시시장권은 대장시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갔으며, 포구시장권 또한 대포구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갔다. 이와 같은 장시시장권과 포구시장권이 결합되면서 18세기 이후에는 전국적 시장권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sup>103)</sup> 이에 따라 서울의 상권도 크게 확대되어갔다. 18세기 중엽 이증환

99) 『續大典』 戶典 田宅

100) 『英祖實錄』 권 68, 영조 24년 11월 甲寅

舊制禁都城四標內起耕 上以民家世耕之田不宜混禁 以致失業 命京兆只禁新田 勿禁舊耕

101) 최완기, 1995 『조선시대 서울의 경제생활』 서울학연구소 33쪽

102) 姜彝天, 『漢陽詞』 城北城南業賣花

은 서울의 상권확대현상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강배가 오가는 것을 말한다면 (중략) 나라안에서 오직 한강이 가장 크고, 근원이 멀며 조수를 많이 받는다. 동남쪽으로 청풍의 황강, 충주의 금천과 목계, 원주의 홍원창, 여주의 백애촌과 동북쪽은 춘천의 우두촌, 낭천의 원암촌과 정북쪽으로 연천의 징파도에는 배편이 서로 통하며, 아울러 장삿배가 외상거래를 하는 곳이다.<sup>104)</sup>

즉 한강 뱃길을 통해 경강상인들이 북한강 상류인 춘천과 낭천, 남한강 상류인 청풍과 충주, 원주, 여주, 그리고 임진강쪽으로는 연천지역에서까지 외상으로 거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이들 지역이 경강지역과 하나의 시장권으로 통합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뱃길을 통해 서울 상권이 확대되는 모습은 18세기 중엽에 그려진 『東國輿圖』의 「京江附臨津圖」에서 잘 표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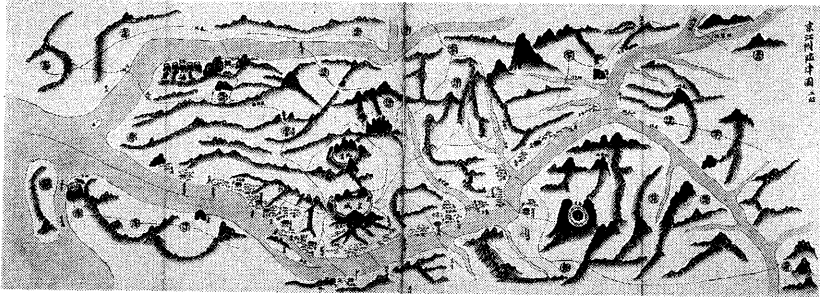
이 지도에는 당시 수로교통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강줄기가 사실보다 훨씬 확대되어 강조되고 있다. 이 지도에 나타난 한강과 임진강의 수로망은 이중환이 말하고 있는 경강상권의 범위와 일치하고 있다. 이 지도는 서울의 상권이 한강과 임진강의 수로를 매개로 경기도는 물론, 강원도와 충청도 일부지역까지 포섭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지도인 것이다.

한편 육로교통의 발달에 따라 서울과 전국이 긴밀하게 연결됨으로써, 서울의 상권은 육로교통을 통하여도 점차 확대되고 있었다. 서울 주변의 수원, 안성, 개성과 같은 도시가 서울의 배후도시로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성 외곽에는 누원점과 송파장시와 같은 새로운 유통거점이 창출되었다.<sup>105)</sup> 이와 같은 전국적 시장권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서울 상권의 확대는 서울의 상품유통체계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103) 高東煥, 1996 「조선후기 交通發達과 全國的 市場圈의 형성」, 『문화역사지리』 8

104) 『擇里誌』 卜居總論, 生理

105) 이상 서울의 商圈 확대현상에 대해서는 高東煥, 1997 「조선후기 京畿地域 場市網의 확대-서울시장권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金容燮教授停年紀念韓國史學論叢』 참조



〈그림 2〉『東國輿圖』의 「京江附臨津圖」

## 2) 상품유통체계의 변화

원래 서울의 유통체계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구매독점권과 소비자에 대한 판매독점권을 장악한 시전상인을 정점으로 형성되었다. 즉 市廛을 頂点으로 하는 상품유통체계(시전체계)는 鄉商·船商·旅客主人-市廛商人-中都兒-行商-消費者로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품유통체계는 시전상인이 갖는 禁亂廛權을 기초로 형성된 것이었다.

그러나 시전을 정점으로한 유통체계는 18세기 후반 종로의 시전상가외에 梨峴과 七牌시장이 중요한 시장으로 부각되는 동시에, 서울 외곽에 송파와 누원등이 새로운 유통거점으로 성장하면서 점차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여객주인, 중도아, 서울의 사상세력들은 시전상인을 능가하는 자본력으로 송파장, 누원점 등을 근거로 도고활동을 벌이면서, 독자적인 유통망을 구축하였다. 예컨대 누원점의 상인들은 안으로는 서울의 중도아와 체결하고 밖으로는 송파장시의 상업세력과 연결되어 서울을 경유하지 않고도 함경도지역의 상품을 전국 각지로 分送하는 유통체계를 형성하였다.

칠패의 중도아나 송파장과 누원점의 富商들은 송우장·누원점·송파장·사평



장-서울의 칠패·이현-소비자로 이어지는 유통로와, 송우장·누원점-송과장·사평장-인근 장시로 이어지는 유통로를 개발하였다. 이른바 시전을 정점으로 한 유통체계와는 전혀 다른 독자적인 유통체계를 통해 상품을 거래한 것이었다. 새로운 유통체계의 담당자들은 권세가와 연결된 사상대고나 또는 기존 시전을 정점으로 하는 유통체계의 하부에서 상업행위를 하던 여객주인, 중도아층들이었다. 이들 중에서 새로운 유통체계를 장악한 세력은 송과등 신흥상업도시의 富商大賈들로서 이들의 출신은 대부분 京江商人이었다.

새로운 유통체계는 생산지에서부터 소비지까지 모든 유통체계를 富商大賈가 장악하여 판매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봉건권력이 부여한 구매독점권과 판매독점권에 근거하여 판매하는 ‘廉價勒買’의 방식이 아니라, 상당한 자본력과 조직력에 기초하여 ‘貿賤賣貴’하는 방식이었다.<sup>106)</sup> 생산지에서 서울까지 이어지는 모든 유통체계를 장악함에 따라 가격의 조절능력도 대폭 향상되어, 이들에게는 최대한의 상업이윤이 보장될 수 있었다. 이러한 유통체계는 시전상업과는 다른 ‘私商體系’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었다. 이들에 의해 구축된 유통체계는 換錢冊을 갖추었을 뿐 만 아니라, 유통량도 한달에 4천-5천량, 1년에는 수만량에 달할 정도였다. 이것은 경강상인등 부상대고에 의해 장악된 새로운 유통체계가 우연적, 일시적이 아니라 항상적, 구조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새로운 상품유통체계는 私商層의 참여와 더불어 서울 도성 안의 전통적인 상업중심지 이외에 서울주변 새로운 유통거점의 창출이라는 조건속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사상체계의 성립은 무엇보다 市廛商人에게 종속되었던 서울의 상품유통을 자유롭게 만들었다. 1791년 육의전을 제외한 모든 시전의 금난전권을 부정한 ‘辛亥通共’은 바로 이와 같은 유통체계의 변화를 정부당국에서 추진한 것임과 동시에, 사상을 정점으로하는 유통체계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었다.<sup>107)</sup>

106) 《備邊司謄錄》 174책, 정조 13년 4월 20일

都雇之貿賤賣貴 取殖要利 專出於富漢之手 操縱舞弄

107) 이상 시전체계의 붕괴와 사상체계의 확립에 대해서는 고동환, 1992 「18세기 서울에서의 魚物流通構造」 『韓國史論』 28 서울대 국사학과 참조

## 6. 맺음말

18세기 서울의 상업은 서울이 상업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크게 변동하였다. 17세기 후반을 계기로 서울의 중심적 상업기관인 시전제도가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종래의 시전이 주로 국가에 대한 의무부담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던데 비해, 17세기말 이후 시전은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상거래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그 결과 1706년을 전후하여 평시서 시안에 각 시전이 주관하는 물종이 자세히 기록되기 시작하였고, 이를 계기로 비시전계 상인인 난전상인의 상행위를 금지하는 시전상인의 금난전권도 보다 명확한 권리로 성립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 시전제도가 크게 정비되고, 금난전권이 확립되어간 까닭은 비시전계상인이 성장하여 시전상인의 유통권을 위협했기 때문이었다.

18세기초 물종별로 시안 등록이 이루어지고, 금난전권이 강화됨에 따라 유통의 독점권을 보유한 시전상인의 이익은 더욱 커졌다. 그러므로 비시전계 상인들도 이러한 특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新廳創設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18세기 전반기에는 소소한 물종에도 대부분 시전이 창설되었다. 17세기 후반에도 신전창설이 많았지만, 이 때 창설된 시전들은 대부분 미전이나 어물전, 생선전등 도성민들의 일용소비품을 판매하는 시전들로서, 이미 있었던 도성안의 本廳외에 대부분 도성밖에 설치된 것이 특징이었다. 그러나 18세기 전반에 설치된 시전들은 수공업자에 의해 설치된 시전이거나 또는 사상세력들이 평시서나 권세가와 결탁하여 설립한 시전이 대부분이었다. 18세기 전반 시전 설치의 목적은 상품거래를 통해 이익을 보는 것보다 오히려 비시전계 상인에 대한 금난전권의 행사를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영세소시민들의 자유로운 상행위는 크게 억제될 수 밖에 없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8세기 중엽부터 지속적인 통공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18세기 중엽이래 시행된 통공정책은 1791년 신해통공조치가 내려지기 이전까지는 시전상인의 강력한 반발로 실패하였다. 그 결과 18세기내내 서울의 시전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17세기 전반 30여개에 불과했던 시전이 18세기말에 이르면 120여개로 늘어났다.

18세기 서울 상업발달의 양상은 이와 같은 시전제도 자체의 변화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보다 중요한 것은 서울안의 상가가 확대되고, 시전이 아닌 점포상업이 성장한다는 점이다.

서울의 상가는 원래 조선초기에 건설된 종로시전상가가 유일한 상가였으나, 17세기 후반에 남대문밖의 七牌시장, 18세기 중엽에 梨峴시장이 출현하여, 18세기 후반에는 三大市로 불려졌으며, 19세기 전반에는 昭義門밖 시장까지 합하여 4곳의 상가가 형성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시전외에 藥局, 煙肆, 懸房, 冊房 및 그림가게 등의 점포상업도 도심 곳곳에서 성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18세기 도시화의 진전에 부응하여 음식점이나 주점, 색주가 등의 각종 서어비스업도 번창하였다. 그리고 생계를 위해 서울로 몰려든 유민들이 서울에 짐적됨에 따라 이들을 노동력으로 동원하여 이루어지는 馬契, 運負契 등의 荷役運輸業과 겨울에 얼음을 저장했다가 여름에 판매하는 藏水業등도 이 시기에 독립적인 영업분야로 발달해갔다. 이러한 현상은 18세기 서울 상업이 市廛과 私商의 단순한 대립구도로만 전개된 것이 아니라, 시전상업, 점포상업, 사상들의 난전, 그리고 각종 영업분야로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업분야외에도 서울에서는 민영수공업이 발달하여 종로를 중심으로 한 지역과 서강과 용산, 뚝섬일대에 수공업지대가 형성되었으며, 도성안팎에서 채소나 담배, 약초, 과일과 꽃재배를 전업적으로 영위하는 상업적 농업도 발달하였다.

이처럼 18세기 서울의 상업구조는 특권적 어용상업체제인 시전체계자체의 변화만이 아니라 상가의 확대와 수공업, 상업적 농업의 발달을 수반하는 것이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교통발달로 인하여 전국적 시장권이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이를 배경으로 하여 서울의 상권도 점차 확대되었다. 우선 서울의 상권이 도성의곽지역인 송파, 누원등지 뿐만 아니라 광주, 수원, 개성, 강화등지까지 확대되었다. 이처럼 서울상권이 확대됨에 따라 서울 내부의 유통체계도 큰 변동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원래 서울에서의 상품유통체계는 시전을 정점으로 한 상품유통체계였다. 즉 서울에 반입되는 모든 물품은 반드시 시전상인을 거쳐서 유통되는 특권적 상

업체제인 것이다. 그러나 도성외곽인 송파나 누원 등에 새로운 상품유통거점이 발생함으로써 사상들은 시전상인의 금난전권이 미치지 않는 송파와 누원을 직접 연결함으로써 시전상인을 배제하고 상품을 전국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유통체계를 확립하였다. 이것이 바로 사상을 정점으로하는 사상체계였던 것이다. 사상체계의 성립은 무엇보다 市廛商人에게 종속되었던 서울의 상품유통을 자유롭게 만들었다. 1791년 육의전을 제외한 모든 시전의 금난전권을 부정한 「辛亥通共」은 바로 이와 같은 유통체계의 변화를 정부당국에서 추진한 것임과 동시에, 사상을 정점으로하는 유통체계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단순히 사상의 성장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전체계의 붕괴와 사상체계의 성립이라는 서울 상업계의 본질적 변화는 사상의 성장이라는 측면외에도 점포상업과 수공업, 상업적 농업의 발달, 상가와 상권의 확대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였던 것이다.